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801호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조 례				
○ 조 례	제 1989 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 획 예 산 과	2
○ 조 례	제 1990 호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 자 리 정 책 과	8
○ 조 례	제 1991 호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전 총 괄 과	10
○ 조 례	제 1992 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총 무 과	13
○ 조 례	제 1993 호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총 무 과	15
○ 조 례	제 1994 호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총 무 과	20
○ 조 례	제 1995 호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 화 관 광 과	25
○ 조 례	제 1996 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 화 관 광 과	28
○ 조 례	제 1997 호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기 업 지 원 과	37
○ 조 례	제 1998 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생 활 경 제 과	40
○ 조 례	제 1999 호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복 지 정 책 과	44
○ 조 례	제 2000 호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노 인 장 애 인 과	47
○ 조 례	제 2001 호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	여 성 가 족 과	50
○ 조 례	제 2002 호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여 성 가 족 과	53
○ 조 례	제 2003 호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교 통 행 정 과	56
○ 조 례	제 2004 호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 동 주 택 과	59
공 고				
○ 공 고	제 1211 호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조정지가 결정·공시	토 지 정 보 과	63
○ 공 고	제 1225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 행사 통보	자 동 차 관 리 과	65
○ 보건소공고	제 2 1 호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 건 행 정 과	71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6월 29일

남동구 조례 제198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3조(「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4조(「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의 개정)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아동·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 률 지 원 요 청 내 역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부모빋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

(뒷면)

개인정보 등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서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는 데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 · 이용 ·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아동 · 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아동 · 청소년 법률지원 담당 법률대리인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아동 · 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재산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아동 · 청소년 법률지원 담당 법률대리인
2. 재산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아동 · 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재산정보 수집 항목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산조회 통합처리 결과
4. 재산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아동 · 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표 3]

정비·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제26조제1항 관련)**I. 보상금 지급기준**

광고물 종류	면적(크기)	기준	지급액	비 고
현수막	일반형	1면	1,000원	
	족자, 깃발형 현수막	1면	500원	
벽 보 · 전 단 음란, 퇴폐성 청소년유해광고물	A4용지 초과	100매	3,000원	
	A4용지 이하	100매	2,000원	

II. 보상금 신청요건

1. 수거대상 지역 : 남동구 전지역
2. 수거보상 신청자격 : 남동구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 주민 및 등록단체
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

수 거 보 상 대 상	제 외 대 상
•우리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전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휨스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건물벽면 포함)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식 전단(불법대출, 음란성광고 등)	•구 지정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행정용·선거용·그 밖에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아파트단지 및 현관내부 부착광고물 •신문지 전단지 •타 구지역 배포 광고물

4. 보상금 신청

가. 신청기간 : 당해 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 남동공단 지원사업소, 각동 주민센터

다. 지 참 물 : 신분증, 통장사본, 사진자료(현수막의 경우에 한함), 수거광고물

5. 보상금지급 :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 은행계좌로 지급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행정기본법」 개정(2023.6.28. 시행)으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6월 29일

남동구 조례 제1990호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형성”을 “형성,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진입 기회 보장”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사업

나.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다.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라.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마.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신설(안 제11조제7호)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6월 29일

남동구 조례 제1991호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 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을 “수입”으로,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안정적이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를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의 출납과 보관은 구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하되,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의무예치금액”을 말한다)은 별도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6조제15호 중 “퇴거명령(이하 “대피명령 등”이라 한다)”을 “퇴거명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청장이 대피명령 등으로 인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지원할 때에”를 “제6조제15호에 따른 이주지원비”로, “실비만”을 “실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피명령 등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을 “제6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촉직 위원 :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사항을 정비.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기금의 운용.관리 정비 : (안 제3조 ~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요건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맞게 개정 : (안 제10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6월 29일

남동구 조례 제1992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을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타법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사항 반영 및 기타 맞춤법 사항 변경
(안 제12조제2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15조제2항)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10일에서 15일로 변경(안 제15조제3항제2호)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6월 29일

남동구 조례 제1993호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남동구	구월동	구월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구월동 628의4, 628의13, 629의2, 1068의2번지, 간석동으로 편입된 구월동 71의51, 71의53, 71의55, 71의57, 72의1, 75의29, 72의31, 72의34, 72의36, 72의38, 72의41, 72의43-47, 72의49-55번지 제외) 수산동에서 편입한 수산동 185의38-40, 185의42, 191의4, 192의2, 193, 194의1, 597의37번지 포함 간석초교다복마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원(간석동에서 편입한 간석동 131의2 일부, 141의1 일부, 141의2 일부, 141의28-30, 142-146번지 포함)
	간석동	간석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간석동 산37의20, 산38의5, 225의23, 225의88, 225의254-256, 225의279번지, 구월동으로 편입된 간석동 131의2 일부, 141의1 일부, 141의2 일부, 141의28-30, 142-146번지 제외) 구월동에서 편입한 구월동 71의51, 71의53, 71의55, 71의57, 72의1, 75의29, 72의31, 72의34, 72의36, 72의38, 72의41, 72의43-47, 72의49-55번지 포함
	만수동	만수동 일원(서창동으로 편입된 만수동 산87의1, 산88의1, 산89의 3-6, 산91의 3-4, 산99의 1-2, 산100의5, 산111의3-4, 708의3, 709의3-4, 710의1-3, 710의 5-8, 710의10, 711의1, 711의4, 712-713, 714의1-2, 715의1-2, 716의1-2, 717, 717의1-9, 718의1-4, 719, 719의1-5, 720-728, 729의1-2, 730, 730의1, 731-732, 733의1-2, 734-736, 737의1, 738의1, 739의2, 815, 816의1, 816의3, 817의1, 818의1번지 제외) 구월동에서 편입한 구월동 628의4, 628의13, 629의2, 1068의2번지 포함 수산동에서 편입한 수산동 1의1, 1의3, 1의8-9, 1의11, 1의14, 1의19-20, 1의 22-27, 2의2-3, 2의5-7, 2의21, 2의45, 2의47-48, 2의51-59, 595의5-8, 595의 16, 595의29번지 포함 간석동에서 편입한 간석동 산37의20, 산38의5, 225의23, 225의88, 225의 254-256, 225의279번지 포함 장수동에서 편입한 장수동 681, 681의1, 681의3, 682의1-2, 682의4-8, 682의 11-12, 684, 684의4, 684의8-9, 685의1, 685의5-7, 686-687, 688의2, 688의4, 688의9, 689의4, 689의6, 689의13, 690의3, 698의3, 698의11, 699의1, 699의6, 700의1, 700의4-5, 701-708, 710, 710의3, 712-714, 761, 761의1, 762번지 포함
	장수동	장수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장수동 681, 681의1, 681의3, 682의1-2, 682의 4-8, 682의11-12, 684, 684의4, 684의8-9, 685의1, 685의5-7, 686-687, 688 의2, 688의4, 688의9, 689의4, 689의6, 689의13, 690의3, 698의3, 698의11, 699의1, 699의6, 700의1, 700의4-5, 701-708, 710, 710의3, 712-714, 761, 761의1, 762번지 제외)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서창동	서창동 일원 만수동에서 편입한 만수동 산87의1, 산88의1, 산89의 3-6, 산91의 3-4, 산99의 1-2, 산100의5, 산111의3-4, 708의3, 709의3-4, 710의1-3, 710의5-8, 710의 10, 711의1, 711의4, 712-713, 714의1-2, 715의1-2, 716의1-2, 717, 717의 1-9, 718의1-4, 719, 719의1-5, 720-728, 729의1-2, 730, 730의1, 731-732, 733의1-2, 734-736, 737의1, 738의1, 739의2, 815, 816의1, 816의3, 817의1, 818의1번지 포함 운연동에서 편입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포함 논현동에서 편입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포함
남동구	운연동	운연동 일원(서창동으로 편입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제외)
	도림동	도림동 일원(남촌동으로 편입된 도림동 산103의1-2, 산104, 584의31, 584의37, 584의63-70, 594의24-33, 594의35, 594의37-43, 594의52-57, 594의59-66, 594의68-78, 596의3, 617의1, 620-623, 624의1-14, 625의1-42, 626의1-44, 627의1-3번지, 논현동으로 편입된 도림동 산93의3, 산94의3, 산96의2-3, 산97의2-4, 산98, 산100, 산100의1-5, 산102, 산102의1-5, 산103의3, 498의4, 584의97-98, 594의20-23, 594의34, 594의36, 594의44-46, 594의48, 594의50-51, 594의79-80, 594의87-91, 595, 596의1-2, 597의3-5, 600의1, 601-607, 607의 1-2, 620의1-2, 621의2, 626의9, 626의45-50, 627의28번지 제외)
	수산동	수산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수산동 1의1, 1의3, 1의8-9, 1의11, 1의14, 1의 19-20, 1의22-27, 2의2-3, 2의5-7, 2의21, 2의45, 2의47-48, 2의51-59, 595의 5-8, 595의16, 595의29번지, 구월동으로 편입된 수산동 185의38-40, 185의42, 191의4, 192의2 193, 194의1, 597의37번지 제외)
	남촌동	남촌동 일원(논현동으로 편입된 남촌동 551의1-4번지 제외) 도림동에서 편입한 도림동 산103의1-2, 산104, 584의31, 584의37, 584의3-70, 594의24-33, 594의35, 594의37-43, 594의52-57, 594의59-66, 594의68-78, 596의3, 617의1, 620-623, 624의1-14, 625의1-42, 626의1-44, 627의1-3번지 포함 논현동에서 편입한 논현동 산94의1-2, 산94의4-5, 산94의10-11, 산95의2, 산96의1, 산97의3, 산102의1, 산103의13-14, 472의8-11, 474의1, 481의3, 524의 1-6, 525의1-4, 526의1-32, 526의42-45, 527의1-3, 584의1번지 포함 고잔동에서 편입한 고잔동 597의69-72번지 포함
	논현동	논현동 일원(남촌동으로 편입된 논현동 산94의1-2, 산94의4-5, 산94의10-11, 산 95의2, 산96의1, 산97의3, 산102의1, 산103의13-14, 472의8-11, 474의1, 481의3, 524의1-6, 525의1-4, 526의1-32, 526의42-45, 527의1-3, 548의1번지, 고 잔동으로 편입된 논현동 383의25, 412의20-23, 415의57-58번지, 서창동으로 편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입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제외) 도림동에서 편입한 도림동 산93의3, 산94의3, 산96의2-3, 산97의2-4, 산98, 산100, 산100의1-5, 산102, 산102의1-5, 산103의3, 498의4, 584의97-98, 594의20-23, 594의34, 594의36, 594의44-46, 594의48, 594의50-51, 594의79-80, 594의87-91, 595, 596의1-2, 597의3-5, 600의1, 601-607, 607의1-2, 620의1-2, 621의2, 626의9, 626의45-50, 627의28번지 포함 고잔동에서 편입한 고잔동 597의2-3, 597의6-25, 597의27-59, 597의61-63, 597의65, 598의8-10, 598의28-34, 599의1-6, 601의1, 606의3, 622, 산72의2, 산77의1-4, 산80의3, 산97의3번지 포함 고잔동에서 편입한 고잔동 산72의2, 산77의1-4, 산97-3, 산80의3, 255의6, 597의2-3, 597의6-25, 597의27-59, 597의61-63, 597의65, 598의8-10, 598의28-34, 599의1-6, 601의1, 606의3, 622번지,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고잔공원 제외) 및 고잔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포함 남촌동에서 편입한 남촌동 551의1-4번지 포함 도림동에서 편입한 도림동 552의1-41, 산105의1-21번지 포함
남동구	고잔동	고잔동 일원(남촌동으로 편입된 고잔동 597의69-72번지, 논현동으로 편입된 고잔동 산72의2, 산77의1-4, 산97-3, 산80의3, 255의6, 597의2-3, 597의6-25, 597의27-59, 597의61-63, 597의65, 598의8-10, 598의28-34, 599의1-6, 601의1, 606의3, 622번지 제외)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고잔공원 제외) 및 고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제외) 논현동에서 편입한 논현동 383의25, 412의20-23, 415의57-58번지 포함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법정동간 경계 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구역 기반 마련 및 주민의 생활권 일치 기여

□ 주요내용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간석동 141의28-30, 142-146번지 및 간석동 131의2 일부(도로), 141의1 일부(도로), 141의2 일부(도로)를 구월동으로 편입함에 따라 관련 별표의 구역 현황 수정
 - 법정동(간석동→구월동) 변경
- 관할구역 제외 및 포함에 대한 문구 통일
 - 관할구역 제외 : (---) 안에서 작성 / 00동으로 편입된 00동
 - 관할구역 포함 : 별도 독립 문구 / 00동에서 편입한 00동
- 관할구역 전반의 표기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표기방식 정리
 - 연속적인 번지 표기 : 000-000
 - 번지에 대한 세부적인 호 표기 : 00의00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6월 29일

남동구 조례 제1994호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 (제2조 관련)

구 명	법정동	동장수	행 정 운영동	관 할 구 역
남동구	계	20	20	
남동구	구월동	4	구월1동	구월동 258, 260의5, 277-294, 300-301, 426-550, 577, 578의1-2, 580의1, 580의4-5, 580의8, 581-582, 583의4, 584-596, 688의2, 688의7, 688의16, 689-896, 1072, 1080, 1081의3, 1081의7-8, 1178-1240, 1328-1331, 1378-1483, 1487-1560, 1576-1601번지 일원 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구월2동	구월동 3-4, 6-7, 12, 20-27, 29-30, 32-34, 52-59, 69-70, 73의3, 341-343, 1071-1072, 1241-1254, 1322번지 일원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원 (간석동에서 편입한 간석동 131의2 일부, 141의1 일부, 141의2 일부, 141의28-30, 142-146번지 일원 포함)
			구월3동	구월동 산62의8-9, 산84의7, 177, 180의4-31, 182의7-8, 201-203, 808-849, 862, 925, 1022, 1084, 1086-1177, 1333-1337, 1339-1433, 1437-1446, 1448-1476번지 일원
			구월4동	구월동 산1-9, 산16의1, 349, 361, 551, 557-575, 580의6-7, 583-584, 587, 597-688, 1068의28, 1255-1320, 1323-1325번지 일원
	간석동	4	간석1동	간석동 273, 275-277, 280-285, 292-294, 302-304, 307-343, 351-358, 397-399, 407-419, 427-470, 478-488, 491-495, 497-501, 503, 505, 508, 510, 512-521, 523, 532, 542-558, 731, 746의17, 748-749, 752, 755, 763, 899-909, 925-932번지 일원
			간석2동	간석동 8-11, 21-24, 27-31, 33-34, 39, 122-125, 129-130, 133-140, 141의1, 153-160, 163-176, 179-180, 182-195, 205-214, 913-914, 938번지 일원 (구월동으로 편입된 간석동 131의2 일부, 141의1 일부, 141의2 일부, 141의28-30, 142-146번지 일원 제외)
			간석3동	간석동 산1, 산3-4, 산6, 산9-10, 산14-23, 산26-28, 산30, 산34-36, 산86, 1-7, 12, 26, 37, 40-67, 69-121, 224-227, 735-736, 767번지 일원

구 명	법정동	동장수	행 정 운영동	관 할 구 역
			간석4동	간석동 177, 216-217, 220-222, 228-241, 243-257, 267-271, 359-362, 364-376, 378-384, 387-395, 524-537, 560-614, 616-617, 762, 893-896, 935, 939번지 일원
남동구	만수동	6	만수1동	만수동 346-353, 367-373, 422-424, 586-597, 808의42-43, 927-937, 948-983, 995-999, 1003, 1005-1006, 1071-1072, 1106번지 일원
			만수2동	만수동 산1, 산21, 산32, 1-2, 3의1, 3의3-5, 5-6, 68, 71-74, 80, 109의15, 109의233, 109의328, 109의431, 109의438, 822, 867-874, 1115의1, 1116-1120번지 일원
			만수3동	만수동 산2-3, 산6, 산8, 80의604, 107, 109, 109의1-14, 109의16-232, 109의234-327, 109의329-332, 109의334-430, 109의432-437, 109의439, 111, 116, 839-866, 988-989, 1114, 1115의2번지 일원
			만수4동	만수동 3-4, 9-30, 32-33, 35-40 산42-44, 산54-55, 산68-69, 산71, 45-67, 69, 84-90, 101-102, 373의1, 386의8, 389의8, 389의10, 391-393, 395-396, 409, 427-428, 431, 444의4, 873, 1113번지 일원
			만수5동	만수동 875-926, 938-947, 991-994번지 일원
			만수6동	만수동 산86-113, 289-291, 332-339, 600-811, 831-832, 984-987, 1008-1052, 1065-1070, 1073-1109번지 일원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	1	장 수 서창동	장수동 일원, 운연동 일원 서창동 산1-19, 산29의1-16, 산30-52, 83의81-93, 159, 161의7-11, 178의1, 179, 179의1, 187, 187의1, 191-448, 454-469의24, 474-479, 484, 500의230, 504-520, 530의16, 533의2, 531-575, 584-626번지 일원
	서창동	1	서창2동	서창동 산29의45, 산30-47, 83의120-124, 85-158, 161의18-24, 167-177, 178의4-11, 179의7, 187의3, 452-453, 469의25, 481-482, 500의102-339, 501-503, 521-530, 576-583, 627-816번지 일원
	도림동 수산동 남촌동	1	남 촌 도림동	도림동 일원, 수산동 일원, 남촌동 일원

구 명	법정동	동장수	행 정 운영동	관 할 구 역
	논현동	2	논현1동	논현동 산1-12, 산17-18, 산21-30, 1-30, 32-58, 60-64, 66-68, 70, 109-112, 322, 549, 577, 591-617, 651-682, 696-700, 720-721, 727-728, 731, 775의1-3, 810번지 일원
			논현2동	논현동 산32-33, 산56-57, 산66, 산75-78, 산80-81, 산83-86, 산94, 산105, 313의5, 423, 427-440, 442-451, 453-454, 471, 473, 491, 505-507, 513, 543, 553-575, 578-590, 618-635, 643-648, 689, 702-708, 717번지 일원
	논현동 고잔동	1	논 현 고잔동	논현동 산13-16, 산19-20, 179, 209, 264, 269-272, 359, 383, 409, 532, 649-650, 719, 732-774, 776-809번지 일원 고잔동 일원,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고잔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간석2동-구월2동」 경계 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구역 기반 마련 및 주민의 생활권 일치 기여
- 동별 행정구역 현황의 대대적인 일제정비를 통한 현행화로 주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행정자료 제공

□ 주요내용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간석동 141의 28-30, 142-146번지 및 간석동 131의2 일부(도로), 141의1 일부(도로), 141의2 일부(도로)를 구월2동으로 편입함에 따라 관련 별표의 구역 현황 수정
 - 행정동(간석2동→구월2동) 변경
- 동별 관할구역 수정사항 전면 반영 : 별표 참고
 - 각 동별 관할 구역 현행화
 - 관할구역 전반의 표기 통일성 확보를 위한 표기 방식 정리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6월 29일

남동구 조례 제1995호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위치) 역사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5 (논현동 680-2)에 둔다.

제9조제2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에 따라 역사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역사관 관람료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		범 위	비고
	개 인	단 체		
어 른	500원	300원	· 19세 이상 ~ 64세 이하	
청소년·군인	300원	200원	· 13세 이상 ~ 18세 이하 및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포함)	
어린이	200원	100원	· 6세 이상 ~ 12세 이하(초등학생 포함)	

- 1. 단체는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아동은 무료. 단, 단체관람시 어린이 단체요금을 적용.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소래역사관을 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에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유물평가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수탁기관에서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조례 제18조(유물평가위원회) 제4항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6월 29일

남동구 조례 제1996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동소래아트홀”을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로, “정하여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6조 앞에 “제3장 대관 및 사용”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관람”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5장 기타”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0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아트홀의 설치) 아트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437번길 32(논현동 767-4)에 둔다.

제3조 앞에 “제2장 운영”을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운영

제4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아트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공연시설에 한함)

제5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09: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4항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제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대관 및 사용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호 중 “대공연장, 소공연장(소강당), 전시실(갤러리)”을 “대공연장(소래극장), 소공연장(스튜디오 제비), 전시실(갤러리 화·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야외공연장”을 “야외공연장(달맞이 터)”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제7조”를 각각 “제8조”로 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관람

제15조(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

를 관리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4항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5조의2를 제16조의2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상적인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기타

제20조의2를 제21조의2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제10조 관련)

1. 사용시간

구 분	시간(공연장)	비 고
오 전	09:00 ~ 12:00	※ 철야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한함
오 후	13:00 ~ 17:00	
야 간	18:00 ~ 22:00	
철 야	22:00 ~ 다음날 07:00	
전시실	09:00 ~ 22:00	

2. 사용료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준	공연	대중음악/행사	비 고
대공연장 -627m ² -703석	오전	100,000	150,000	무대 403m ² (21m*14m)
	오후	140,000	190,000	
	야간	200,000	250,000	
소공연장 -277m ² -196석	오전	30,000	50,000	소강당 서랍식객석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전시실(525m ²)	1일	m ² 당 200	※ 무빙월 120m / 벽체 90m	

※ 비고

- 1) 공연대관은 평일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2) 공연대관의 기본 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한다. 다만, 1회 사용시간 동안 2회 이상의 공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3)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4)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공연대관료의 20%를 가산한다.
- 5) 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50%를 적용하며, 철야대관은 매 3시간 단위로 야간사용료의 100%를 적용한다. 다만,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
- 6) 공연은 공연 자체가 목적인 국악·풍물, 순수음악,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등을 말한다. 다만, 관람 대상이 한정되는 특정 단체의 공연이나 상업적 의도가 명확할 경우에는 행사 대관료를 적용한다.
- 7)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시 기본시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 8) 냉방비 및 난방비는 1시간당 연료비(전기료 포함) 시가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 사용자 의무가동시간 : 3시간(예열시간 포함)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 의무신청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 사용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부대설비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규모(m ²)	사용료	비 고
연습실1	93.0	50,000	○ 1회 기준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연습실2	62.8	30,000	
연습실3	50.4	30,000	
연습실4	16.0	20,000	
스튜디오(대)	57.7	30,000	
스튜디오(소)	29.6	20,000	
문화교실1, 2	72.3	40,000	
문화교실3	91.5	50,000	
회의실	108.9	50,000	
공연장로비	400.0	50,000	
야외공연장	50.0	30,000	
분장실1(주연)	18.2	10,000	
분장실2(여)	38.8	20,000	
분장실3(남)	32.8	20,000	

다.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녹 음	방송, CF, 영화촬영	비 고
대공연장	150,000	1,000,000	방송, CF, 영화촬영 : 8시간 기준 녹음 : 1회 4시간기준

※ 녹음은 녹음 작업을 위한 대관을 말하고, 철야작업시는 사용료의 150%로 하며, 녹음의 준비 또는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50%로 한다.

라.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기 본 사용료	비 고
시설명					
피아노	대공연장	고급	1일	60,000	
무대	댄싱플로어(무용매트)		1일	100,000	
	샤막		1일	100,000	
	덧마루	기본50㎡	1일	50,000	
		추가	1㎡	2,000	
	음향반사판		1일	5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음향	음향콘솔 CD Player 포함	대공연장	1일	70,000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 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소공연장	1일	50,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메인스피커(1식) 앰프 포함	대공연장	1일	70,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소공연장	1일	50,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모니터스피커(개별) 앰프 포함	대공연장	1일	20,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소공연장	1일	20,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유선마이크(다이내믹) 스탠드 포함	대공연장	1일	2,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소공연장	1일	2,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유선마이크(콘덴서) 스탠드 포함	대공연장	1일	10,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소공연장	1일	10,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선마이크 배터리,스탠드포함	대공연장	1회	20,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소공연장	1회	20,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빔프로젝터	15,000Ansi(대)	1회	200,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500Ansi(소)	1회	100,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조명	기 본	대공연장	1회	50,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소공연장	1회	30,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Console		1일	100,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Follow spot		1회	30,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Moving Light		1일/1대	30,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Elipsoid Light		1일/1대	2,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Strobe Light		1일/1대	3,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Par 64		1일/1대	1,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Par46(1세트 8대)		1일/1조	3,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Bank(1세트 4구)		1일/1조	3,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 기계		1일/1대	10,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포그 기계(포그 기계액 포함)		1일/1대	30,000	○ 뒤편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타	의상 및 대·소도구		1일	취득가액의 5%	○ 단위당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에 한함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 기준 (제1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일반강좌	1인 1월	10,000원 ~ 100,000원	일반 소양강좌
전문강좌	1인 1월	100,000원 ~ 200,000원	전문성 특화강좌

[별표 3]

정기회원 가입비(제16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 분	회원기간	할인기준	가입비	비 고
일반회원	1년	1인 2매	10,000	※ 기간만료일은 도래시점(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가족회원	1년	1인 4매	20,000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현재 소래아트홀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 관람시간, 매표수수료 조항 등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탁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근거 명시 : (안 제1조)
- 아트홀의 설치 위치 명문화 : (안 제3조)
- 관람시간 조항 삭제 : (안 제4조제2항)
- 시설명칭 현실화 : (안 제7조)
- 매표·수표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 : (안 제15조)
- 매표수수료 관련 조항 삭제 : (안 제15조제2항, 제3항)

조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6월 29일

남동구 조례 제1997호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동노동자”란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종사자, 퀵서비스 종사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②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

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사 및 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상담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4.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
 2. 금융, 노무, 취업, 주거, 건강 상담
 3.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의 정비 시설 제공
 4.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적용대상(안 제3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안 제6조)
- 위탁 및 재정지원(안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6월 29일

남동구 조례 제1998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를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를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7조”를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8조 각 호 제10조 중 “사항은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사항은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규정을 삭제하여 지정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권고를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해당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 동의 절차 삭제 (안 제2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6월 29일

남동구 조례 제1999호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남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 훈련 및 교육 사업
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안 제4조,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 표창 (안 제7조)
-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6월 29일

남동구 조례 제2000호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법 제2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 칙”을 “활동지원급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개정하며, 같은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활동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 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4. 그 밖에 활동지원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사항과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활동지원사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제4호)
- 제4장 활동지원급여 신설 (안 제11조, 제12조)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에 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1조)
-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2조)
- 그 밖에 조문 띄어쓰기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6월 29일

남동구 조례 제2001호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동구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 가. 청소년수련시설
 - 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남동구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

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일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행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표창) 구청장은 관내 모범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해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주간을 기념하여 남동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청소년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돕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행사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홍보 및 입장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6월 29일

남동구 조례 제2002호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학교”를 “이란 학교”로,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을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남동구(이하“구”)”를
“남동구(이하 “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으
로, “교육장(이하“교육장”)”을 “교육장(이하 “교육장”)”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제6조
로 하며, 제4조,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피해학생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 피해학생 또는 스스로 학교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언제든지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남동구 구민은 누구든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알리도록 노력한다.

제5조(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6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학생을 보호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8조에 따른 남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2. 학생 및 학부모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17조”를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6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능은 「남동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를 “기능은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3. 남동구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제10조(종전의 제7조) 전단 중 “다른위촉”을 “위촉”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9조) 제2항 본문 중 “년”을 “연”으로, “임시회는”을 “임시회의는”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2조) 중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상 조례」”를 “대하

여 「남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권리와 보호·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기반 마련

☐ 주요내용

- 피해학생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조항 신설 : (안 제4조)
-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조항 신설 : (안 제5조)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조항 신설 : (안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6월 29일

남동구 조례 제2003호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집중조명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설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설치·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 최소화 및 경제적이고 친환경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및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계획수립 및 투광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6월 29일

남동구 조례 제2004호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를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로,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동주택법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제2항제1호”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동주택법관리법 시행령」 (이하”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로, “한다)제87조제2항”을 “한다)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에서「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범위에서「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	공 동 주 택 명		관리사무소 연 락 처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피신청인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서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 61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칭 현행화 : (안 제12조)
- 국민권익위원회 「층간소음 갈등 해소 방안」 반영
: (안 제6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 그 밖에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211호

2023.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조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3.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3. 6. 27.

남 동 구 청 장

○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23. 1. 1.
2. 결 정 내 역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3. 대 상
 - 2023.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필지

[단위:원/m²]

토지소재지	당초지가	조정지가	비 고
구월동 645-9	241,400	265,500	상향조정
남촌동 6-1	254,900	274,100	상향조정
남촌동 6-2	325,000	883,900	상향조정
남촌동 464-2	271,200	285,500	상향조정
수산동 75-10	599,400	606,200	상향조정
수산동 75-11	704,800	713,900	상향조정
수산동 131-4	950,400	1,033,000	상향조정
수산동 136-2	1,298,000	1,375,000	상향조정
수산동 136-3	1,086,000	1,246,000	상향조정
수산동 279-1	257,400	270,400	상향조정
수산동 279-2	311,900	327,400	상향조정

수산동 279-3	257,400	270,400	상향조정
수산동 282	312,700	328,200	상향조정
수산동 284-1	276,800	290,600	상향조정
논현동 33-16	242,000	249,700	상향조정
고잔동 740-4	1,571,000	1,464,000	하향조정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남동구청 토지정보과【☎(032)453-6152, 6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225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3.6.27. ~ 2023.7.12.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75고5501 외 3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6)

2023. 6. 27.
남 동 구 청 장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22-00194	75고5501	다마스5인승	남동구 고잔로 8-5, 서울폐차사업소 사내방치	(주)와*****스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 (공항동)	2022.08.08.	(주)서울폐차 사업소	032-442-6660
2	2022-00195	75고5580	다마스5인승	남동구 고잔로 8-5, 서울폐차사업소 사내방치	(주)와*****스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 (공항동)	2022.08.08.	(주)서울폐차 사업소	032-442-6660
3	2022-00196	75고5606	다마스5인승	남동구 고잔로 8-5, 서울폐차사업소 사내방치	(주)와*****스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 (공항동)	2022.08.08.	(주)서울폐차 사업소	032-442-6660
4	2022-00197	57루6214	스파크 1.0 DOHC LPG	남동구 고잔로 8-5, 서울폐차사업소 사내방치	(주)와*****스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 (공항동)	2022.08.08.	(주)서울폐차 사업소	032-442-6660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압류 및 저당내역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촉탁기관/ 단속부서	등록일자	차량등록금액	압류내역/영치내역
2022-00194	75고5501	다마스5인승	(주)와*****스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 (공항동)	저당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 *저당을부번호 : 4102-2013-008375	2013.09.27	9,300,000	
						압류	경기도 광명시	2014.12.18	지도민원과-10328	주정차위반 (2014-089227 W)
						압류	서울강서경찰서	2014.12.26	2014D1123028107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112370141160729)
						압류	서울강서경찰서	2015.02.03	2015D1123008125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112370141387815)
						압류	서울 강동구	2015.02.11	교통지도과-2857	주정차위반과태료 [2014-09-101827]
						압류	서울 강동구	2015.02.11	교통지도과-2857	주정차위반과태료 [2014-09-102086]
						압류	서울시 강서구	2016.07.06	징수과(교통) -13410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2015-12-004974)
						압류	서울시 강서구	2016.07.06	징수과(교통) -13410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2015-03-001144)
						압류	서울시 강서구 교통행정과	2016.09.22	교통행정과-61651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체납[2016-06001691]
						압류	금천구 세무1과	2017.04.25	세무1과세외-0425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압류	서울 중구	2017.12.06	주차관리과-34323	주정차위반과태료[2017-08-104938]
						압류	서울 중구	2018.05.03	주차관리과-11677	주정차위반과태료[2018-01-105170]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2018.08.03	징수부-906063	건강(요양)연금,고용, 산재보험 체납,
						압류	서울시 강서구 교통행정과	2016.09.22	교통행정과-10793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체납[2019-01-0015]
						압류	서울시 강서구 세무관리과	2020.09.15	세무관리과-13410	지방세체납
						압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2020.11.12	교통행정과-95718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2020-05-001080
						압류	서울 강서구	2022.03.10	세무관리과(세외) -13410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20-05-1064) 75고5502 대체
						압류	서울 강서구	2022.03.10	세무관리과(세외) -13410	자동차감사위반과태료(2016-05-1200) 75고5502 대체
						압류	서울 강서구	2022.03.10	세무관리과(세외) -13410	자동차감사위반과태료(2018-12-2428) 75고5502 대체
						압류	강서구 교통행정과	2022.04.12	교통행정과-35755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22-02-0001 79(대체:68러8755)
						압류	강서구 교통행정과	2022.05.09	교통행정과-45338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22-03-0003 47(대체:68러8370)
						압류	강서구 교통행정과	2022.07.11	교통행정과-69050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22-05-0007 35(대체:349보4875)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압류 및 저당내역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2022-00195	75고5580	다마스5인승	(주)와*****스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공항동)	저당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 *저당을부번호 : 4102-2014-000216	2014.01.07	4,650,000	
						압류	서울 종로구	2014.11.11	주차관리과-30630	주정차위반과태료[2014-06-103365]
						압류	서울강서경찰서	2015.10.12	2015D1123030009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2370150753101)
						압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6.07.14	교통행정과-45603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16-04-001096]
						압류	서울강서경찰서	2016.07.21	2016D1123008539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2370160124410)
						압류	서울 구로구	2018.04.10	주차관리과-8368	주정차위반과태료[2017-11-101957]
						압류	서울강서경찰서	2018.05.21	2018D1123016245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2370180046521)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2018.08.03	징수부-906063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 체납,
						압류	서울 영등포구	2019.03.04	주차문화과-6631	주정차위반과태료[2018-11-103161]
						압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2019.06.04	교통행정과-39725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1904-000996
						압류	강서구	2019.12.12	교통행정과-99564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201910-22 44
						압류	서울시 강서구 세무관리과	2020.09.15	세무관리과-13410	지방세체납
						압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2020.11.09	교통행정과-95718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20-09-002259
						압류	서울시 강서구청	2021.04.12	교통행정과-31701	[구일반]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202 1-02-0234]
						압류	서울 서초구청	2022.03.17	주차관리과-6974	주정차위반 과태료 (201704-105458) 대체:75고550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압류 및 저당내역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촉탁기관/ 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2022-00196	75고5606	다마스온승	(주)와*****스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 (공항동)	저당	KB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4102-2014-008370	2014.10.24	4,950,000	
						압류	서울 동대문구	2016.09.07	주차행정과-27673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5-103674]
						압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행정과	2016.09.22	교통행정과-61651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체납[2016-05001201]
						압류	서울 종로구	2016.12.08	주차관리과-34333	주정차위반과태료[2016-07-102381]
						압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2018.05.10	교통행정과-34868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18-01-000030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2018.08.03	징수부-906063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 체납,
						압류	서울 성동구	2018.08.08	교통지도과-22942	주정차위반과태료[2018-04-101934]
						압류	서울강서경찰서	2018.10.10	2018D1123022953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2370180556782)
						압류	서울 성동구	2019.01.07	교통지도과-039	주정차위반과태료[2018-09-101744]
						압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2019.03.04	교통행정과-8001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201901-000045
						압류	서울시 강서구 세무관리과	2020.09.15	세무관리과-13410	지방세체납
						압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2020.11.12	교통행정과-95718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2020-06-001708
						압류	강서구	2020.12.11	교통행정과-106820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202009-0 02311
						압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2021.03.17	2021카단269 자동차가압류	2021.3.16. 가압류 결정
						압류	서울 강서구청	2022.03.08	주차관리과-7034	주정차위반 과태료 (201708-101900) 대체:58우0171
						압류	서울 강서구청	2022.03.08	주차관리과-7034	주정차위반 과태료 (201709-102047) 대체:58우0171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압류 및 저당내역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축탁기관/ 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2022-00197	57루6214	스파크 1.0 DOHC LPG	(주)와*****스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 (공항동)	저당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 *저당을부번호 : 4102-2013-009368	2013.10.29	4,800,000	
						압류	서울 종로구	2014.11.11	주차관리과-30630	주정차위반과태료[2014-06-104869]
						압류	서울강서경찰서	2015.11.19	2015D1123032367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2370150924074)
						압류	서울강서경찰서	2016.10.17	2016D1123018517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12370160695048)
						압류	서울 종로구	2017.08.10	주차관리과-19347	주정차위반과태료[2017-03-103506]
						압류	서울 중구	2017.10.12	주차관리과-27749	주정차위반과태료[2017-06-106799]
						압류	서울 중구	2017.11.07	주차관리과-30838	주정차위반과태료[2017-07-103968]
						압류	서울 중구	2017.11.07	주차관리과-30838	주정차위반과태료[2017-07-104704]
						압류	서울 중구	2018.01.09	주차관리과-625	주정차위반과태료[2017-09-102760]
						압류	서울 중구	2018.03.05	주차관리과-5302	주정차위반과태료[2017-11-103600]
						압류	서울 중구	2018.04.05	주차관리과-8647	주정차위반과태료[2017-12-103330]
						압류	서울 중구	2018.04.05	주차관리과-8647	주정차위반과태료[2017-12-103939]
						압류	서울 중구	2018.07.13	주차관리과-18486	주정차위반과태료[2018-02-104002]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2018.08.03	징수부-906063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 체납,
						압류	서울 중구	2018.08.06	주차관리과-20478	주정차위반과태료[2018-03-102957]
						압류	서울 중구	2018.08.06	주차관리과-20478	주정차위반과태료[2018-03-103079]
						압류	서울 중구	2018.10.05	주차관리과-25290	주정차위반과태료[2018-05-104553]
						압류	서울 중구	2019.01.08	주차관리과-322	주정차위반과태료[2018-08-103171]
						압류	서울 종로구	2019.03.11	주차관리과-5277	주정차위반과태료[2018-10-106585]
						압류	서울 종로구	2019.04.09	주차관리과-8157	주정차위반과태료[2018-11-102566]
						압류	서울 종로구	2019.07.10	주차관리과-17290	주정차위반과태료[2019-02-102335]
						압류	서울 종로구	2019.07.10	주차관리과-17290	주정차위반과태료[2019-02-103914]
						압류	서울 종로구	2019.07.10	주차관리과-17290	주정차위반과태료[2019-02-104307]
						압류	서울 중구	2019.08.05	주차관리과-17463	주정차위반과태료[2019-03-103175]
						압류	서울 종로구	2019.10.02	주차관리과-25825	주정차위반과태료[2019-05-104482]
						압류	서울 종로구	2019.11.04	주차관리과-28995	주정차위반과태료[2019-06-103969]
						압류	서울 종로구	2020.02.04	주차관리과-3003	주정차위반과태료[2019-09-104308]
						압류	서울시 강서구 세무관리과	2020.02.21	세무관리과-13410	지방세체납
						압류	강서구	2020.08.14	교통행정과-69337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202006-001498
						압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2020.11.12	교통행정과-95718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2020-07-001741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3-21호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8.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법률 제19305호, 2023. 3. 28. 공포)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근거 법 조항 추가 : (안 제1조, 제2조)
- 과태료 신설에 따른 부과기준 추가 : (안 제3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보건행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보건행정과)
- 연 락 처 : ☎ 453-5071, FAX 453-507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6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근거 법 조항 추가 : (안 제1조, 제2조)
- 과태료 신설에 따른 부과기준 추가 : (안 제3조, 별표)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역보건법」 신설 조항(제22조, 제3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대상자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때에는[별표]”을 “때에는 [별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영업의 양도, 상속,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구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	100	200	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에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 -----.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자) ----- 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남동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 ----- 때에는 [별표]-----.

[참고자료]

□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